

개정 전	개정 후
<p><⑦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동산§78의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 면 율) 취득세 <u>35%</u>, 재산세 <u>50%</u>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감면 재설계, 현행 3년 연장 ○ (감면율) 취득세 <u>수도권 25% ; 비수도권 35%</u> 재산세 <u>수도권 25% ; 비수도권 50%</u>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§78의3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 면 율) 취득세·재산세 50~100% * 사업초기 5년 100%, 그 다음 2년 50% 등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감면 종료
<p><⑨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§81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) : 취득세 50% · 재산세 5년간 50%, 등록면허세 면제 ○ (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) : 취득세 62.5~100% 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현행 3년 연장 ○ (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) : 취득세 50% · 재산세 5년간 50%, 등록면허세 면제 ○ (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) 취득세 62.5~100% 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
<p><⑩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§84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미집행)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 중, 용어 정의는 없으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 ○ (감면대상) 도시 · 군계획시설·공공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·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만 감면 ○ (일몰기한) 2027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미집행의 정의 신설 등 규정 정비 ○ (미집행) 실시계획의 인가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)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제외 ○ (감면대상)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·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 ○ (일몰기한) 2027.12.31.